

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 썬나 페스타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

사 업 명	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 썬나 페스타
주 관 기 관	(재)인천중구문화재단
사 업 부 서	개항희망문화상권사업단

□ 과 업 명 : 2025 썬나 페스타 운영 용역

□ 과업목적

- 신포상권에서는 레트로 컨셉을 활용하고 차이나타운에서는 한중문화의 전통을 활용하여,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
- 개항희망문화상권의 주요 관광자원과 문화예술 공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러운 상권 활성화 유도
-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으로 상권 활력 증대

□ 계약기간 : 착수일로부터 ~ 2025. 11. 17

□ 장 소 : 개항희망문화상권 일대

□ 금 액 : 197,200,000원

□ 과업내용

- 썬나 페스타 프로그램 기획, 연출 및 전반 운영
 - 신포상권(신포국제시장, 신포상가연합회)
 - 차이나타운상권(차이나타운, 동화마을)
- 무대, 음향, 조명 등 시스템 설치 및 관리 전반
- 썬나 페스타 온·오프라인 홍보 운영
- 행사 인력 및 안전 관리
 - 행사 진행 인력의 배치 및 운영 관리
 -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행사 중 안전 인력 관리
- 기타 행사 진행을 위한 물품 구매 및 제작 전반

□ <썬나 페스타> 운영 개요(안)

구 분	시 간	9월 13일 ~ 14일		10월 18일 ~ 19일		비고	
		신포상권		차이나타운 상권			
본 행사	13:00~14:00	먹거리 부스		체험프로그램	문화 공연		
	14:00~15:00		사전공연		메인 공연		
	15:00~16:00				문화 공연		
	16:00~17:00				메인 공연		
	17:00~18:00		본 공연		문화 공연		
	18:00~19:00						
	19:00~20:00						
체험		레트로 게임 스탬프 투어		비눗방울 제작, 중국 전통 공예 체험 등			
기타 행사		먹거리 부스		이벤트 부스 운영			
무대		무대(간이무대), 음향 등 설치					
홍보		인쇄 제작물 등 온·오프라인 홍보					

1. 축제명 : 썬나 페스타 in 신포

□ 과업의 범위

○ 공간적 범위 : 신포국제시장 민영주차장, 신포국제시장 일대

행사장 배치 예시	체험프로그램 동선 예시

○ 내용적 범위

구 분	주요 내용(예시)	참고 사진
메인무대	→ 청년 및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 상시 사전 공연을 통해 축제 분위기 조성 내용 제시 → 사업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국내 유명 뮤지션 중 실현 가능한 출연진으로 제안	
체험 프로그램	→ 신포시장 및 문화의거리 연계형 민속놀이체험, 레트로 게임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내용 제시 [예시] · 신포시장 및 문화의거리 일대에서 스탬프 투어 형식의 이벤트 운영 · 신포시장 및 문화의거리 내 공실 사용 여부 검토 · 메인무대(공기놀이) > 푸성귀전 동상 앞(비석치기) > 빨간등대(제기차기) > 라이브스튜디오(딱지치기)	
음식 부스	→ 신포상권 음식 판매 부스 모집 및 운영 내용 제시 → 사전 섭외 계획 및 관련 협조 서류 구비 등 계획 수립 내용 제시 [예시] · 취식존에서 메인무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음식과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	
이벤트 부스	→ 문화의거리 상가연합회 및 전통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 운영 내용 제시 [예시] · 문화의거리 관련 경품 이벤트 진행 등	

*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, 다른 과업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음

2. 축제명 : 찐나 페스타 in 차이나타운

□ 과업의 범위

○ 공간적 범위 : 차이나타운, 동화마을 일대



○ 내용적 범위

구 분	주요 내용(예시)	참고 사진
메인 공연	→ 중국 현지 공연팀을 본 과업 예산 내 20,000천원(추정) 내외로 섭외 검토 예정이며, 과업 시에는 발주처에서 섭외한 공연팀과 메인 공연 기획 및 운영 내용 제시 [예시] · 중국 전통 퍼레이드 진행 · 간이무대를 활용한 축하 공연 진행 등	
문화 공연	→ 각 공간의 특색에 맞는 문화 공연을 운영하며, 메인 공연 시에는 운영하지 않음 · (동화마을) 뽀예로, 마술 공연 등 가족단위가 즐길 수 있는 내용 제시 · (차이나타운) 비파 공연, 변검 공연 등 중화문화 및 축제 분위기 조성 내용 제시	
체험프로그램	→ 각 공간의 주요 방문객 특색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내용 제시 · (동화마을) VR체험, 비눗방울 제작 등 가족단위가 즐길 수 있는 내용 제시 · (차이나타운) 중국 전통 공예체험, 변검 제작 등 중화문화 및 축제 분위기 조성 내용 제시	
이벤트 부스	→ 차이나타운 상권과 연계한 경품 이벤트,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내용 제시	

* 상기 내용 중 중국 현지 공연팀을 제외한 내용은 예시이며, 다른 과업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음

□ 전체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

- 종합계획은 과업지시서 제안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추진계획은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
- 재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세부집행계획, 행사진행 매뉴얼, 시나리오 등을 제출

□ 세부 프로그램 기획·운영에 관한 사항

- 메인행사, 체험프로그램, 문화공연, 이벤트 등 각 상권 특색에 맞는 축제 추진 방향 제안 및 운영
- 기존 지역 축제와 차별화 운영 방안 제시
- 행사 취지에 부합하여 구민을 비롯한 관광객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, 상권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신규 체험(부대) 프로그램 발굴·운영
- 장소별 운영 프로그램 제안
 - 차이나타운·동화마을 상권
 -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장소 제시
 - 장소별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방법 등 제시
 - 신포 상권
 -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제안
 - 음식부스 및 체험부스 등 공간 조성 추진 방향 제안
 - 장소별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방법 등 제시
-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행사 운영 조정 방안 제시
- 지역예술인 공연 및 버스킹 등 기획 및 운영 방안 제시
- 기타 사항
 - 일정별·공간별 프로그램 배치 및 운영계획 제안
 - 일정별·공간별 프로그램 총괄표(타임테이블 포함) 제안

※ 계약 후 7일 이내 세부추진계획안 발주처 제출

□ 무대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·운영 계획

○ 행사장 조성(설치) 및 운영 관련

- 메인 무대(간이 무대) 및 음향 장비 설치 일체
 - 무대 디자인 제시 (평면도, 단면도 등)
 - 음향, 조명, 영상, 중계, 특수효과 등 장비 사양, 상세 수량 제시
 - 분야별 전담 인력(상근) 현장 배치안 제시
- 체험 프로그램 부스 설치 일체
- 행사 안내 부스 설치 및 공연장 대기 장소 확보 일체
- 야간 운영 시 전기 설비를 위한 발전차 설치(간선, 전기작업 등)
- 우천과 강풍을 고려한 무대 장비 세팅 및 운영(조명, 음향 등)
- 축제 운영을 위한 허가사항 검토 및 신청 지원(전기, 도로점용 등)

○ 이벤트 부스 관련

- 개항희망문화상권 통합브랜드 ‘개항스퀘어 신나장’ 홍보 안내 부스 운영
- 경품 및 행사이벤트 행사 비용 과다 산정 불가(상권별로 산정하되 500만원 ~ 2,000만원 범위 내) 협상 단계에서 경품 이벤트 리스트 제시

□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 진행인력 관리 및 운영

○ 축제 준비, 기획(실행), 마무리 등에 따른 대행사 인력 투입계획 수립

○ 축제 운영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계획 수립

- 행사관련 모든 운영인력은 대행사에서 인력 채용 및 추진
- 행사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및 업무분장 명단 및 임무 제출
 - 행사장 주요 요충지 교통, 안전, 경호 인력
 - 행사장 환경정비, 쓰레기 수거 인력 등
- 운영인력은 신원이 확실해야 하며, 친절교육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(행사장 내 민원발생 시 대행사 책임)
- 프로그램별 진행요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(사전교육 포함)
- 관내 대학생 등 행사 진행 자원 봉사자 모집·교육·운영

□ 행사장 공간 조성 계획

- 교통지도 및 종합안내 등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(종합상황실 등)
- 각종 위기상황 대처 및 관람객 문의·요구사항 응대를 위한 24시간 현장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
- 행사정보 제공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 안내물 설치·운영

□ 안전 관리 및 위기상황 대책 계획 수립

- 행사기간 도난, 밀집사고, 화재, 분실, 안전사고 등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
 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(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)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
- 화약류 등 사용 시에는 그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
 - 철거 및 환경관리, 행정사항 처리 등 포함
- 비상 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, 감염병 예방대책
- 행사기간 주차질서 및 교통통제 등 질서유지 계획
- 행사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(경찰, 소방서 등)과의 업무 협조 체계 구축

□ 우천·강풍 등 기상변화, 감염병 등 돌방상황에 대비한 별도 대체 프로그램 구성

□ 홍보 운영

- 축제 관람객 확대를 위한 구체적 홍보 마케팅 계획 전반 수립
- 온라인 사전 홍보
 - 축제 포스터 제작 및 키비주얼 디자인 제작(웹 배너 등)
 - 보도자료 제작 및 배포
 -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네이버 블로그 등 SNS 콘텐츠 제작 및 배포
 - 출연 아티스트 및 관련 채널 홍보물 게시
 - 지역 문화예술 관련 커뮤니티 등 홍보물 게시 등
- 오프라인 사전 홍보
 - 거리 현수막, 윈드배너, 알림배너, 행사장(부스) 현수막 등 제작 설치
 - 인천 지역 내 라이브클럽, 공연장 등 관련 공간 내 홍보물 비치

-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중구청 등 관내 유관기관 내 홍보물 비치 등
- 교통 관리 대책에 따른 교통 관리 안내물 제작
 - 입간판, 현수막, 윈드배너 등 제작 설치
 - 안내요원 파라솔, 테이블, 의자 등 설치 등

4

과업의 수행지침

□ 과업수행지침

○ 일반사항
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(견적서),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
-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운영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, 과업을 수행하는 데 인천중구문화재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
-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2일 이내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, 세부 프로그램 별 1인 이상의 전담 인력 배정을 통해 지속적인 보고 및 업무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함
-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
-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과업 진행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, 과정 진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에 사업부서의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
-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, 발주처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

-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견해 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

○ 사업 사전 보고 및 승인

-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

○ 과업 착수

-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이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,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 - 착수보고서
 - 과업수행계획서
 - 용역공정예정표
 - 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(이력 포함)
 - 보안각서
 - 그 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
-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예정표를 필요에 따라 공정별 작업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때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
-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과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

○ 사업의 시행
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행사를 함에 있어 출연진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,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

-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-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착수 신고 시 제출한 참여 자격 및 용역수행자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발주처가 용역수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함
-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
- 계약상대자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

○ 업무협의를 및 진행사항 보고

- 업무협의
 -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진행 사항을 공유하여야 하며,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함
- 진행상황 보고
 - 계약상대자는 행사 관련한 진행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
-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의 내용, 수행 일정, 이행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수정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
-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실행계획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수정이나 조정의 경우에도 수정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
○ 발주처의 지도·감독

- 발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여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에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
-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어긋나거나 부당

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
○ 손해배상 등

- 계약상대자는 행사에 필요한 공연단체의 공연진행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, 음원 등 사용 및 유포에 관련한 저작권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함
- 사업 기간 중 사업비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유무형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처에 있음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. 다만,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
-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바로 배상하여야 함

○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사항

-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,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“계약상대자”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
- 영상 등의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, 발생 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해야 함
-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폰트, 이미지 등의 사용·재사용에 관련된 라이선스는 반드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함
-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
-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는 외부 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

○ 책임소재 · 계약해지

-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상대방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처의 손해(신뢰실추, 손해배상 등)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
- ①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
- ②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하면서 고의 ·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
- ③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④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해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- ⑤ 기타 과업수해영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않았을 경우

- 상기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

○ 안전 · 보건관리

-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안전·보건 관리를 위해 용역 참여 인원 등에게 반드시 보건 및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, 교육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상시 대비하여야 함
- 과업 수행에 모든 방역안전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, 금전적 배상 발생 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용역 수행과정은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함

○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

- 예산집행은 세부실행계획서의 예산계획에 의하여 집행하며, 사업비는 계약상대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, 발주기관은 계약상대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함

*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,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

- 계약상대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(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)」 제1장 제2절 ‘선금 및 대가 지급’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‘선금사용내역서’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계약상대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, 인건비(출연료 등)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함
- 사업비의 정산은 계약체결금액으로 정산하고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발주자의 지급의무는 없으며, 지급하지 아니함
-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출연료 등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(납부)하여야 함

○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

-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하고 언론보도 및 행사 관련 제작물 일체와 행사 진행 사항 등을 담은 촬영 사진, 영상 등을 포함한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

○ 보안 및 기타사항

-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 일체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 소유로 하며,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
-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게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
-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급할 모든 자료 및 결과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해 철저한 보안 관리를 시행해야 함
-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이로 인한 발주처의 민·형사상 배상 요구에 불복하지 않음

- 용역 수행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은 과업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·대여·공개 불가
-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내용상의 오류 및 수정·보완 등 사항 발생 시 발주처의 요구를 수용해야 함
-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협상 과정을 통해 추후 변동사항 결정 가능
- 이 계약에 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행함

5

안전관리의 지침

□ 안전관리지침

-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·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,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(산업·시민)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(재)인천중구 문화재단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 규정에 준하는 행사 안전 관리 매뉴얼 및 상황별(응급, 날씨(폭우 및 강풍 등), 민원 등)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시, 비상상황 관리를 포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[안전보건 관리계획에는 안전보건 관리인력(책임자, 관리자, 안전요원 등) 구성·운영계획, 비상 연락망 구축,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해진 서식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함]
-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, 법률 위반, 권리 침해 등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책임소재는 과업수행자에 있음
-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·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·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

(재)인천중구문화재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
-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,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
-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안전 인력 배치 등 안전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(군중 밀집 안전사고 예방, 전기 사고 등 기타 재해대처계획 등 포함)
-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, 안전관리 전문요원 등 현장 운영 인력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분야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제, 안전교육 및 점검 일지 등을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사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(상권별 행사 3주전) 및 검토·보완 절차를 수행해야 함
- 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편성해야 하며 구급차, 안전요원 배치, 안전장구 및 비상구급약품, 야간안전용품 등 안전관리 물품 구입, 관람객 대상 안전보건 홍보물(X-배너, 리플렛 등) 제작비 등으로 사용
-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과업기간 내 사용된 내역만 인정하며 증빙불가능한 정산항목은 차감될 수 있음 (실 정산대상으로 카드영수증, 이체확인증 등 실제 대금 집행된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 필요)
- 행사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불특정 방문객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(착수계 제출 시 보험증권 제출)
- 소화기, AED 등 필수 안전 장비 및 기본 의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
- 설치 및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보험을 가입해야 함

- ☐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진행사항 파악과 점검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하며,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해야 함
- ☐ 사업자는 각 단계별 완료 시마다 다음 공정에 따라 사업수행 경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함

형 태	보 고 내 용	비 고
착수보고	- 착수계 제출 - 기본추진계획 및 산출내역서, 일정표 등	계약 후 7일 내
중간보고	- 세부조성계획 및 디자인 조감도 등 - 안전보건관리계획서	행사 개최 4주 내
완료보고	- 최종 산출물(과업수행내역) 결과보고 - 완료계, 정산서 제출	행사 종료 후 2주 내
수시보고	- 긴급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"발주기관"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- 발주기관에서 요청시, 실질적 실행 보고자료 제작	수 시

- ☐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관련 자료 일체(각종 언론보도 및 노출 내역, 사진, 동영상)를 포함한 제반 사업비 집행,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

성과물의 종류	제출기한	제출 부수	비 고
- 과업 최종보고서 - 사업비 집행내역서 - 사업 관련 산출물 및 일체서류(완료계, 사진, 영상 등)	행사 종료 후 2주 내	각 1부	USB 1개 (모든 자료 포함)

※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보고서 파일, 행사영상, 사진, 디자인 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별도 저장매체(USB)에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